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선발규정

제정 2017. 3. 13.
개정 2017. 11. 13.
개정 2018. 11. 22.
일부개정 2020. 6. 30.
일부개정 2020. 11.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전형) 재단의 장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인재육성장학생 : 학업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격려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장학금
2. 미래장학생 : 면학 의욕이 있는 저소득가정, 장애, 한 부모, 조손 가정 등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3. 재능장학생 : 예·체·기능·인문사회·과학에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시흥을 빛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4. 선행장학생 : 효·선행·자원봉사 정신으로 다른 이들의 귀감이 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동행장학생 : 시흥시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자녀, 학교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6. 시흥산업단지장학생 :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에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7. 장학기금 기탁자(단체)명의 장학생 : 장학기금 기탁자(단체)명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8. 멘토링장학생 :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재능지원 멘토링 사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9. 다자녀장학생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10. 학술·연구·정책개발·활동 장학금 : 시흥시 발전과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장학금과 연구·활동비
11. 특별장학금 :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실직, 폐업, 부도, 이혼, 질병, 사

망 등)으로 학업 중단에 위기에 놓인 학생들 또는 그 외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3조 (수혜대상자의 자격) ① 장학생 수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시흥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시흥시민과 청(소)년 및 교사,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0. 11. 24.)

1. <삭제 2020. 11. 24.>
 2.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한 나이 청소년. 단, 지역에 없는 예·체·특성화고 재학생도 포함. (일부개정 2020. 11. 24.)
 3. 대학생은 국내 2년~ 4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일부개정 2020. 11. 24.)
 4. <삭제 2020. 11. 24.>
 5.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한다. <신설 2020. 6. 30.>
- ② 제1항 3호 해당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학교에 한한다.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등 사이버대학은 선발 제외)
- ③ 제 2조 8호 멘토링장학생 멘토는 1항 1호~3호에 해당하고, 멘티대상자는 관내 초·중·고등 학생이며, 제2조 10호의 대상자는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 중인 청(소)년 및 교사, 교육·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장학생은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선발기준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 ⑤ 교사 및 교육·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일부개정 2020. 6. 30.)

제4조 (장학생 지원 및 추천) 장학생 추천권자 및 지원방법은 재단의 장학생 선발 공고에 따르며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제5조 (선발절차 및 제출서류) 선발공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 ①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관련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재단 홈페이지(시흥시, 교육기관홈페이지)등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한다.
-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재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선발방법 및 심사) 선발방법과 심사는 다음에 의한다.

-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장학사업이 가능한 보통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선발 후 지급중지 및 반환 발생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수혜자의 선발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장학생선발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발하여 심사결과를 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최소 7일전에 공지하고,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 한다.

④ 기타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르고,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재단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연구·활동비포함)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 하기 위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재단 당연직 이사로 하며, 위원은 재단 이사 중 4명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장학생선발 심사의결서는 [별지 7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장학생선발대상) ① 시흥인재육성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재학생 및 졸업 예정자로서 성적환산 점수가 우수한 자
2. 대학교(전문대 포함) 재학생인 경우 직전학년 취득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자(4.3 만점의 경우 3.7 이상인 자)

3. 성적환산점수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며 동점일 경우 기준연도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 고등학교 입학예정자

성적증명서 및 NEIS상에서 확인 가능한 전 과목의 Z점수 [(내점수-평균)/표준편차]를 표준점수로 변환[(Z점수*표준편차)+평균]산출함. 점수가 아닌 이수/미이수 과목의 경우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 고등학교 재학생 및 대학교 입학생 (반드시 전년도 1~2학기 평균임)

※ 성적증명서 및 NEIS상에서 확인 가능한 전 과목의 단위수와 등급을 곱한 후 총 단위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총 등급평균(성적환산점수)을 산출함. 등급이 아닌 이수/미이수 과목의 경우 평균등급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text{각 과목의 평균등급} \times \text{단위 수})$ 의 합 / 총 단위수 = 등급]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작성방법 예시>

구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국사	체육	음악	미술	기술	총계
1 학기	단위수	4	4	3	3	3	3	2	2	2	2	28
	등급	1	2	3	4	1	2	3	이수	이수	이수	-
	단위수*등급	4	8	9	12	3	6	6	-	-	-	48
평균등급				1.71(48/28)								
구분		국어	영어	수학2	지리	물리	국사	체육	음악	미술	가정	총계
2 학기	단위수	4	4	4	3	3	3	2	2	2	2	29
	등급	2	2	2	1	1	1	이수	이수	이수	3	
	단위수*등급	8	8	8	3	3	3	-	-	-	6	39
평균등급				1.34(39/29)				성적환산점수 1.53				

4. 대학교 재학생 (아래의 환산 점수표를 사용함)

[대학성적 환산 점수표-1년간 평균학점 이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적용]

백분율 환산점수	4.5점 만점	4.3점 만점	4.0점 만점
0	4.5	4.3	4.0
1	-	-	3.95
2	4.4	4.2	3.9
3	4.3	4.1	3.8
4	4.2	4.0	3.7
5	4.1	3.9	3.6
6	4.0	3.8	3.5
7	3.9	3.7	3.4
8	3.8	3.6	3.3
9	3.7	3.5	3.2
10	3.6	3.4	3.1
11	3.5	3.3	3.0
12	3.4	3.2	2.9
13	3.3	3.1	2.8
14	3.2	3.0	2.7
15	3.1	2.9	2.6
16	3.0	2.8	2.5
17	2.9	2.7	2.4
18	2.8 이하	2.6 이하	2.3 이하

5. 대학교 장학생은 4년제와 전문대를 나누어서 선발하며, 전문대 장학생의 비율은 10% 이상으로 하되 기 접수된 지원자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미래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입학예정자포함) 전교 77% 이내, 대학생 학점 2.0이상(4.5만점기준, 환산점수적용)접수대상으로 지원자의 부양의무자(부모 등)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계가 낮은 자

※ 부양의무자(부모)가 각각 다른 지역의 세대주이거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전부 합산하며, 부모가 친지나 자녀의 세대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친지나 자녀의 고지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2.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이사회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 저소득가정의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손가정 등)
- . 장애(부모포함)를 가졌거나 기타 불의의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주민의 자녀
- . 재단이사·학교장·동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재단이사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라고 인정하는 자

③ 동행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고·대)
 -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하며, 대학생의 경우 세칙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시흥시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고·대)
 - ※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중 1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국적이거나 귀화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며(부·모 양측이 다 외국 국적인 경우 비대상), 대학생의 경우 동 규정 제3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시흥시 학교밖 청소년
4. 다문화·새터민 동행장학생은 지원자의 부양의무자(부모등)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계가 낮은 학생부터 선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이사회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장애(부모포함)를 가졌거나 기타 불의의 사고 및 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주민의 자녀(결손가정 등)
 - .재단이사·학교장·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재단이사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 가정 학생이라고 인정하는 자
5. 다문화·새터민 동행장학생의 선발비율은 각 전형(다문화/새터민)별 신청 비율대로 정하되 동률인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며, 신청·자격 미달로 인해 선발인원이 남는 경우 제8조의 정원을 증원하여 선발한다.

④ 재능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 이내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에서 개인분야 3위(단체는 1위에 한함) 이내성적을 득한 자. 단, 다양한 재능분야의 장학생이 선정되도록 심사선발한다.

대회훈격 \ 순 위	1위	2위	3위
전국/국제대회	50	30	20
도 단 위	20	10	5

⑤ 선행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장학생 중 자원봉사분야 장학생 선발은 해당기간 내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선발하되, 봉사활동실적 증명은 공인된 기관·단체의 홈페이지{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에서 발급된 증명만을 인정한다.

2. 그 외 선행장학생의 선발은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사회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효·선행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의 표창을 수상하거나 언론에 보도된 학생으로 재단이사 과반수 이상이 선행장학생으로 인정하는 자

.재단 이사 또는 학교장,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재단이사 과반수 이상이 선행장학생으로 인정하는 자

⑥ 시흥산업단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관내에 거주하며 현재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기업체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우선 순으로 선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자의 부양의무자(부모)의 시흥시 관내 산업단지 기업 재직연수가 오래된 가정의 학생을 선발한다.

2. 성적환산은 제9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⑦ 다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에 거주중인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고·대)

2. 다자녀 장학생의 선발 평가 기준

3. 선발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자녀수와 학생 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하며 점수 기준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 자녀수(50점 만점)

구분	7명 이상	6명	5명	4명	3명
점수	50	48	46	44	42

- 학생수(50점 만점 초·중·고·대)

구분	4명 이상	3명	2명	1명
점수	50	46	42	38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고도 동순위일 경우, 시흥시 관내(장학대상 학생 기준) 거주기간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5. 한 가구당(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명 이내의 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고루 신청·선발 되도록 한다.

⑧ 학술·연구·정책개발장학금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발전과 재단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학술연구 장학금. 관내 고등학생 및 대학

생(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교육·청소년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며, 이사회에서 장학금의 규모와 인원을 결정한다.

⑨ 특별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학업중단에 놓인 학생 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교 및 단체 기관장의 추천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 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⑩ <삭 제>

제9조 (장학기금 기탁자(단체)명의 장학생) ① 장학기금 기탁자(단체)는 수혜자를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으며, 미지정 기탁의 경우 수혜학생의 선발은 본 재단 정관 및 시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장학금을 기탁한 사람 또는 단체는 해당자(단체)의 명의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기탁자(단체)명의의 장학생 수 및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특수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지정기탁 등의 경우에는 이사장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행 후 이사회에 보고 한다. (일부개정 2020. 6. 30.)

제10조 (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 등의 지원은 다음에 의한다.

1. 장학증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하고, 이사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전달한다.

2. 장학금은 선발된 때부터 당해 학년 동안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되, 해당 장학생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장학부서로 송금 하거나, 본인 또는 학부모(법정보호자)명의의 통장으로 지급(계좌송금) 한다. (일부개정 2020. 6. 30.)

3. <삭제 2020. 6. 30.>

4. 대학생 장학금은 등록금에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하되, 지급액이 장학생의 잔여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그 외 재단 목적사업과 관련한 기타 장학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장학금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퇴학, 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군에 입대하거나 신체·질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단,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유예 후 재지급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영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전역 후), 휴학증명서
- 신체·질병 : 건강진단서, 휴학증명서

4. 고등학생의 경우 관외 학교로 전학하였을 때

5.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때

6.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장학금(수업료)을 지급받아 장학금 총액이 본인의 등록금을 초과하는 때

7.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이사회가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후 발견 시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7.3.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지원서

지원전형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락처	본 인 : 보호자 :		
	E - mail					
	학 교 명 (올라가는 연도기준)	고등학교	학년	(입학·재학·졸업)		
	대학교(캠퍼스)	학년 :	학과(부) :	학번 :		
타 기관 이증지원 여부	장학금 이름	주관단체		비 고		
				(신청중 / 지급예정 / 지급받음)		
				(신청중 / 지급예정 / 지급받음)		

기입요령 및 제출서류

- 본인 및 가족(보호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이증지원란의 경우 지원하는 학기의 타 장학금 신청/수령 내역을 기입할 것.
(예시 : 국가장학금 i 유형 / 한국장학재단 / 신청중)
※ 장학금 총액은 등록금(수업료) 이하로 제한되며 초과 시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함.
- 미래장학생의 경우 아래의 9번 항목에 맞게 서류를 제출할 것.
- 제출서류(정확한 심사를 위해 아래 항목에 맞게 제출 요망)
 1.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장학생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1통
(대학생에 한함, 2년 이상 시흥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3. 성적증명서(시흥 인재육성 장학생, 시흥 스마트허브 장학생 전형만 제출)
 4. 입상경력 증명서(예체기능문학장학생, 선행장학생에 한함)
 5. 지원자의 전년도(1~12월) 부·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미래장학생·다문화 새터민 동행장학생 전형만 제출
- 부·모 양측 다 제출, 1년 간 납부내역이 1회도 없는 사람의 경우
해당자 명의의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한부모가정의 경우 보호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비공개처리) 제출
 6. 공인된 기관의 봉사활동 인증서(해당자만, 1365/VMS/dovol 발급내역만 인정)
 7. 지원자 부·모의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시흥스마트허브 장학생에 한함)
 8. 지원자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다문화·새터민 동행장학생에 한함)
 9. 졸업증서(대학생만)

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재단법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지 원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생년월일		소 속 (학 교)	
	주 소			

※ 시흥시인재양성단은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장학생 선발 용도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장학생 본인 확인 및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재단 내 활용 2.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개 인 정 보 항 목	지원자의 성명, 주소, 소속학교, 전화번호, e-mail,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지원자 보호자의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
보 유 및 이 용 기 간	장학사업 시행기간 내 보유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등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장학생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상기인의 성명, 주소, 소속학교, 전화번호, e-mail,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와 상기인 보호자의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연간 고지금액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장학금 이중지원방지시스템 등록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장 학 증 서

기탁자(단체)명-기탁 장학생만 해당

소속기관, 단체, 학적
성 명

위 학생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20 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시흥시의 작은 도움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마음의 씨앗이 되고 나아가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바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〇 〇 〇

【별지 제4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 : 고등학교 학년 반 (입학·재학·졸업)
 대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남, 여)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H.P) :

E - mail :

본인은 20 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선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보호자 주 소 :

장학생과의 관계 :

성 명 : (인)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주 소 :
학교명 및 학년 : 고등학교 학년 반 (입학재학졸업)
 대학교 학과 학년
성 명 : (남, 여)
생 년 월 일 :

본인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선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시흥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장학생 추천서

장학생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교 (단체,기관)명		학년 학과(반)	
추천사유	*추천내용(공적)이 많은 경우 페이지 추가 가능		

위 학생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 . .

○○○ 학교 (기관,단체) 장 (직 인)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장학생선발 심사의결서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선발 규정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20 년 장학생을 심사 선발함.

□ 의결사항 : 지원자 ()명 중 ()명 선발, ()명 탈락
* 예비후보자 ()명
 년 월 일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

“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이사장 귀하